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960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13578	이용우의원	2025. 10. 14.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후 축조심사
2213643	한정애의원	2025. 10. 20.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12.)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2213938	우재준의원	2025. 11. 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7.)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후 축조심사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사소위원회(2026.2.12.)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12.)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2.12.)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를 제126조의3으로 하고,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u>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u>제126조의2</u> (생략)	<u>제126조의3</u> (현행 제126조의2와 같음)